

2. 건설업등록기준의특례

건설교통부고시 제1999-341호 1999. 11. 4

(근거법령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16조제1항)

1. 기술능력

가.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의 등록기준상 등급 및 종목별 기술자를 우선 갖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많은 업종에서 적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기술자 수의 2분의 1의 범위내(1미만의 수는 떼어버린다)에서 등급 및 종목별로 중복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하여 중복인정 한다.

나. 건설업등록기준으로 보유하여야 하는 기술자 수가 같은 경우에는 일반건설업, 전문건설업의 순서대로 하고, 건설업의 종류(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가 같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번호순서대로 한다.

다.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관련종목의 기술자격 취득자의 범위는 「건설업관리지침」에서 정

한 바에 의하여 전문건설업종 상호간에 중복하여 활용할 수 있는 기술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토목건축공사업·산업설비공사업·철강재설치공사업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는 적용례

· 건설업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많고 별표 1에 의한 건설업종의 번호순서가 빠른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상 기술자로 “토목기사 2인, 토목산업기사 3인, 건축기사 1인, 건축산업기사 3인, 기계분야기술자 1인”을 확보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 산업설비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10인(15개분야중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4인을 포함한 10인)이므로 5인($10 \times 1/2 = 5$)을 등급 및 종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산업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으

로는 토목건축공사업에서 이미 확보한 기술자와 등급 및 종목이 같은 토목·건축·기계분야 기술자 수가 5인(기사 3인 포함)은 중복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기사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 1인을 포함한 해당분야 기술자 5인을 추가 확보하여야 함

철강재설치공사업의 경우 등록기준상 기술자 수가 5인(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 건축기사 또는 건축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인을 포함한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1인, 용접분야 건설기술자 1인을 포함한 기계분야 중급기술자 이상 1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2인)이므로 2인($5 \times 1/2 = 2.5$, 1미만은 떼어버림)을 등급 및 종목이 일치되는 경우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음

따라서, 철강재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토목건축공사업 및 산업설비

공사업에서 이미 확보한 기술자와 등급 및 종목이 같은 토목·건축·기계분야기술자중에서 2인은 중복하여 인정하고, 나머지 기술자 3인을 등록기준으로 추가 확보하여야 함.

2. 자본금, 공제조합 출자좌수 : 건설업등록기준상 보유하여야 하는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가장 많은 업종의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을 우선 갖추고, 나머지 업종은 등록기준상 자본금 또는 공제조합출자증권이 많은 업종에서 적은 업종순으로 순차적으로 2분의 1의 범위내에서 중복 인정한다.

3. 시행시기

- 가.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나. 이 고시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건설업면허 및 등록기준의 특례규정의 적용방법(건경58070-2188, '97. 7. 30)은 이를 폐지한다.